

## 2. JA교원인사운영세칙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8조(정년보장 심의) ① 교무처장은 정년보장 심사대상 JA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1년 9개월 전까지 대상교원과 대상교원이 속한 원소속 학과 및 참여학과 주임교수에게 심사시기, 심사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전 항의 통보를 받은 교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원정년보장제 운영세칙”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원소속 학과 및 참여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전 항의 서류를 받은 원소속 학과 주임교수는 참여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대상교원의 이력서와 대표논문(4편 내외)을 첨부한 외부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5명 이상의 국내외 전문가에게 보내고, JA정년보장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회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평가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교원정년보장제운영세칙”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p> <p>④ 원소속 학과 주임교수는 외부평가서를 접수받는 즉시 외부평가서를 참여학과 주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⑤ JA교원의 정년보장 심사를 위하여 원소속 학과 주임교수는 참여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타 학과 교원 등 외부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JA정년보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원소속 학과 주임교수가 교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p> <p>⑥ JA교원의 정년보장 임용 여부에 대한 찬반비밀투표는 원소속 학과와 참여학과에서 정년보장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단, 정년보장교원의 수가 5명 미만인 학과의 경우에는 JA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의견으로 갈음한다.</p> <p>⑦ 전항의 찬반비밀투표결과 각 학과의 전체 정년보장교원의 찬성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 해당학과의 JA교원 임용을 철회하며, 과반수 이상 찬성한 학과에서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주임교수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JA교원 임용 변경 신청서류와 함께 “교원정년보장제 운영세칙”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년보장 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소속 학과의 주임교수가 그 결과를 교무처장과 해당교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정년보장과 교수승진심사의 일원화(불필요 문구 삭제)</p>